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주식회사 원케이테크 소유물건  
(2025타경41569)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류재왕

감정평가서번호: 세연250319-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연감정평가사사무소

#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정 세 연

감정평가액	칠억일천삼백삼십사만육천원정 (₩713,346,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류재왕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3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원케이테크 (2025타경41569)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5.03.31	2025.03.28 ~ 2025.03.31
		작성일	2025. 04. 0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529 38 327x--- 327 15 131x--- 131 92 786x--- 786	토지	1,529 145	449,000 185,000	686,521,000 26,825,000
합 계					₩713,34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540-17	임야	계획관리지역	1,529	1,529	449,000	686,521,000	
2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540-12	도로	계획관리지역	38 327x--- 327	38	185,000	7,030,000	매각지분 갑구 6번 주식회사 원케이테크 지분 전부
3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540-21	도로	계획관리지역	15 131x--- 131	15	185,000	2,775,000	매각지분 갑구 9번 주식회사 원케이테크 지분 전부
4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540-22	도로	계획관리지역	92 786x--- 786	92	185,000	17,020,000	매각지분 갑구 10번 주식회사 원케이테크 지분 전부
<b>합 계</b>								<b>₩713,346,00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소재 "청옥중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경매(임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은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 3.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토지에 대한 평가로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되, 토지는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4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타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과 시장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4. 기준시점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완료일자 인 2025년 3월 31일을 기준하였음.

###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건의 실지조사 착수일은 2025년 3월 28일 이고, 가격조사완료일은 2025년 3월 31일이며,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확인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6.그 밖의 사항

①기호(1)은 대체로 평탄한 나지 상태의 건축 허가지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경매 과정 시 이해관계인은 본건 토지에 대한 제반 인허가 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참고>건축신고사항(출처: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허가신고번호:2017-건축복지과-신축허가-41

허가구분:신축허가

허가/신고일:2017-01-26

대지면적:1,529㎡ 건축면적:610.5㎡ 연면적:777.11㎡

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 기타용도:제조업소, 사무소

②기호(1) 남동측 지적경계선에 옹벽 등이 소재하며, 거래 관행 등을 참작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사진참조)

③기호(1)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컨테이너 2개가 소재함.

④기호(2~4)는 공유지로서 지분별 위치 확정이 없어 필지 전체를 기준하여 단가 결정하고 의뢰 지분만 평가하였음.

⑤본건의 이용상황 및 경계는 개측(목측 등)하여 파악하였으므로 경매 과정 시 정확한 지적 경계 및 이용상황, 허가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 토지는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참작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 (2) 토지평가액 산출

##### 가. 대상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공시지가 (원/㎡)	비고
(1)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540-17	임	1,529	임야	계획 관리	세로 (가)	사다리 평 지	189,100	
(2)	동소	540-12	도	38 (327중)	도로	계획 관리	세로 (가)	부정형 평 지	117,600	
(3)	동소	540-21	도	15 (131중)	도로	계획 관리	세로 (가)	부정형 평 지	117,600	
(4)	동소	540-22	도	92 (786중)	도로	계획 관리	세로 (가)	사다리 평 지	117,600	

##### 나. 비교표준지 선정

#### ①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 안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까이 있을 것.

### ②인근 소재 표준지

(평택시 안중읍, 공시기준일:2025.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가	덕우리 540-19	대	1,553	공업용	계획 관리	세로 (가)	가장형 평 지	365,100
나	덕우리 453-5	임	624	토지 임야	계획 관리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153,100

③이상의 선정 기준과 허가 사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표준지 “가” 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함.

### 다.지가변동률

- ①국토교통부에서 월별로 조사 발표하는 해당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였음.
- ②2025년 3월 지가변동률 미고시로 직전월(2025.2)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한 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준시점일까지의 평택시 지가변동률은 계획관리지역 0.425% 상승임.

<지가변동률>경기도 평택시 (25.01.01~25.03.31 ) (계획관리)

2025.01.01 ~ 2025.02.28 : 0.284

2025.02.01 ~ 2025.02.28 : 0.127

$( 1 + 0.00284 ) * ( 1 + 0.00127 * 31/28 ) \approx 1.00425$

### 라.지역요인의 비교

본건과 표준지는 인근 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유사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마. 개별요인 비교

#### ① 개별요인 비교항목

가로조건 :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조건 :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 : 일조 등, 자연환경(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획지조건 :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지목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등.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등.

#### ② 개별요인 비교

기호(1): 대상지가 표준지 "가"와 제요인 비슷하며 행정적조건(지목 등) 열세함.

기호(2~4): 대상지가 표준지 "가"와 제요인 비슷하며, 현황 도로임.

기호	적용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
(1)	가	1.00	1.00	1.00	1.00	0.80	1.00	0.800
(2~4)	가	1.00	1.00	1.00	1.00	0.33	1.00	0.330

### 바. 그 밖의 요인의 보정

#### ①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96누16001, 96누17711, 2000두10106, 2002두5054 판결 등 다수)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선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산출된 보정률을 적용함으로써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거래가능가격 수준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격차를 보정할 필요성이 있음.

②본건 거래 및 평가사례(출처: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

(평택시 안중읍)

목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평가/거래단가 (원/㎡)	기준시점 (매매일)	비고
담보	덕우리	540-17	임 (허가지)	1,529	계획 관리	332,000	2021.04.30	기호(1)
		540-12외	도	145 (1,244중)		평가외		기호(2~4)
실거래	(3년 이내 포착 된 바 없음)							

③인근 평가사례(출처: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평택시 안중읍)

구분	목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평가단가 (원/㎡)	기준시점	비고
A	시가 참고	덕우리	80-00	공장용지	4,961	계획 관리	600,000	2024.04.12	
B	경매	덕우리	160-00	임 (허가지)	859	보전 관리	359,000	2024.02.19	
C	자산 재평가	덕우리	540-00	공장용지	1,553	계획 관리	696,000	2023.12.31	
D	담보	덕우리	540-00	대	1,448	계획 관리	592,000	2023.07.2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④인근 거래사례(출처: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택시 안중읍)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	토지단가(원/㎡) (거래가액)	거래시점	비고
#1	덕우리	300	전	565	계획 관리	242,123 (136,800,000원)	2025.02.25	
#2	덕우리	360-0	임	920	계획 관리	230,000 (211,600,000원)	2022.07.15	
#3	덕우리	450-0	대	456	계획 관리	393,480 (179,427,240원)	2024.01.05	
#4	덕우리	60-00	장	8,559	계획 관리	622,680 (6,663,340,083원)	2023.12.19	사용승인일 2009.07.02
			건물	3,420	일반 철골구조			
토지단가산정: {거래가액-건물산출가격} ÷ 토지면적 {6,663,340,083-(3,420×390,000(600,000×26/40))} ÷ 8559 ≃ 622,682(원/㎡)								
#5	덕우리	80-00	장	4,961	계획 관리	646,840 (3,900,000,000원)	2024.04.18	사용승인일 1995.01.23
			건물	2,786.28	철골조외			
토지단가산정: {거래가액-건물산출가격} ÷ 토지면적 {3,900,000,000-(2,786.28×248,000(700,000×16/45))} ÷ 4,961 ≃ 646,845(원/㎡)								

⑤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ㄱ)산식

$$\text{격차율}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가격(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표준지가격(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ㄴ)사례선정 및 그 사유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내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 중 표준지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 기호<A>를 선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ㄷ)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a. 사례<A>기준 표준지 "가"가격

구분	기준 가격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	산출가격	산정치
사례기준 표준지가격	600,000	1.02415	1.00	0.95	0.98	0.98	1.00	1.00	1.00	0.912	560,414	1.528
비교표준지 기준시점가격	365,100	1.00425									366,651	
*경기도 평택시 계획관리지역 시점수정(2024.04.12~ 2025.03.31):1.02415 **지역요인: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표준지는 사례보다 가로조건(도로의 폭 등) 열세, 접근조건(교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 열세, 환경조건(인근 환경 등) 열세함.												

⑥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구분	용도지역	지가수준	비고
임야 (허가지)	계획관리	300,000원/㎡ ~ 480,000원/㎡	위치, 면적, 도로상태, 지형 및 형상,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대,공장용지 (공업용)	계획관리	510,000원/㎡ ~ 700,000원/㎡	

⑦ 그 밖의 요인 보정률 결정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4조,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정성 및 균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근 유사 토지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등과 제요인(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을 비교 검토하고, 본건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정하였음.

비교표준지	용도지역	그밖의요인보정치
가	계획관리	1.53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사. 토지평가액 산정

본건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제요인, 부대시설(옹벽, 기타 등)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산식

표준지공시지가 × 지가변동률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 × 기타요인비교치 = 산정단가

기호	비교표준지		지가 변동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기호	공시지가 (원/㎡)						
(1)	가	365,100	1.00425	1.00	0.800	1.53	448,781	449,000
(2~4)	가	365,100	1.00425	1.00	0.330	1.53	185,122	185,000

### 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물건 종류	기호	면적(㎡)		적용단가 (원/㎡)	산출가액 (원/㎡)	비고
		공부	사정			
토지	(1)	1,529	1,529	449,000	686,521,000	
	(2)	327 × 38/327	38	185,000	7,030,000	
	(3)	131 × 15/131	15	185,000	2,775,000	
	(4)	786 × 92/786	92	185,000	17,020,000	
	합계					713,346,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 (1) 산출개요

대상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근 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4>를 선정하였음.

(평택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토지단가(원/㎡) (거래가액)	거래시점	비고
#4	덕우리	60-00	장	8,559	계획관리	622,680 (6,663,340,083원)	2023. 12. 19	사용승인일 2009.07.02
			건물	3,420	일반 철골구조			
토지단가산정: {거래가액-건물산출가격} ÷ 토지면적 {6,663,340,083-(3,420 × 390,000(600,000 × 26/40))} ÷ 8559 ≈ 622,682(원/㎡)								

#### (3) 사정보정

위의 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을 위한 자료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음.

기 간	지가변동률	비고
2023. 12. 19. ~ 2025.03.31.	1.03539	평택시 계획관리지역

#### (5) 지역요인 비교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본건 토지와 거래사례는 부동산의 이용이 동일적이고, 유사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6) 개별요인 비교

기호(1): 본건은 사례(#4)보다 가로조건(도로의 폭 등) 열세, 행정적 조건(지목 등) 열세함.

기호(2~4): 본건은 사례(#4)보다 가로조건(도로의 폭 등) 열세, 현황 도로임.

대상지 기호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
(1)	#4	0.94	1.00	1.00	1.00	0.80	1.00	0.752
(2~4)	#4	0.94	1.00	1.00	1.00	1.00	0.33	0.310

### (7) 토지 단가의 결정

기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기호	사례단가 (원/㎡)						
(1)	#4	622,680	1.00	1.03539	1.00	0.752	484,826	485,000
(2~4)	#4	622,680	1.00	1.03539	1.00	0.310	199,862	199,000

### (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물건 종류	기호	면적(㎡)		적용단가 (원/㎡)	산출가액 (원/㎡)	비고
		공부	사정			
토지	(1)	1,529	1,529	485,000	741,565,000	
	(2)	327×38/327	38	199,000	7,562,000	
	(3)	131×15/131	15	199,000	2,985,000	
	(4)	786×92/786	92	199,000	18,308,000	
	합계					770,42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Ⅲ.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구분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비고
토지	기호(1)	449,000	485,000	
	기호(2~4)	185,000	199,000	

#### 2.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이 동 규칙 제12조 제 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3.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면적(㎡)		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공부	사정			
토지	기호(1)	1,529	1,529	449,000	686,521,000	세부내역 토지감정 평가명세표 참조
	기호(2~4)	1,244중 일부	145	185,000	26,825,000	
합 계					713,346,000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소재 "청옥중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토지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일반 대중교통 이용편은 다소 불편한 편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황 나지 상태이고, 남동측 지적 경계선에 옹벽이 소재함.

기호(2~4):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임.

##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6.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서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2~4): 현황 도로로 북서측 노폭 약 6.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연결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성장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300m 이내).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성장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300m 이내),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4):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성장관리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함.(사진참조)

## (7) 공부와의 차이

-.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①임대관계

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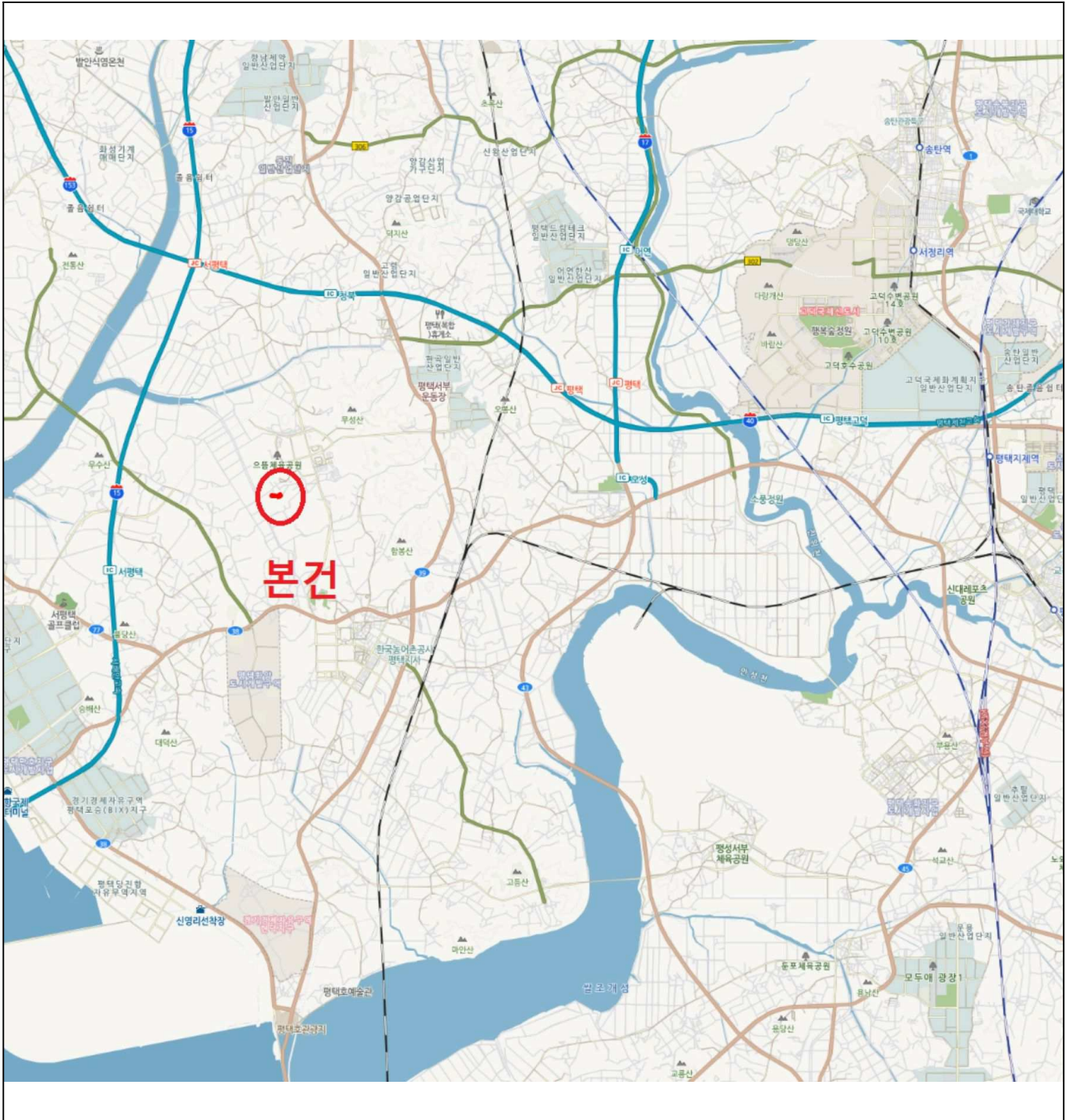
②기 타

본건 이용상황 및 경계는 개측하여 파악하였으므로, 경매과정시 정확한 지적경계 및 이용 상황 등이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540-17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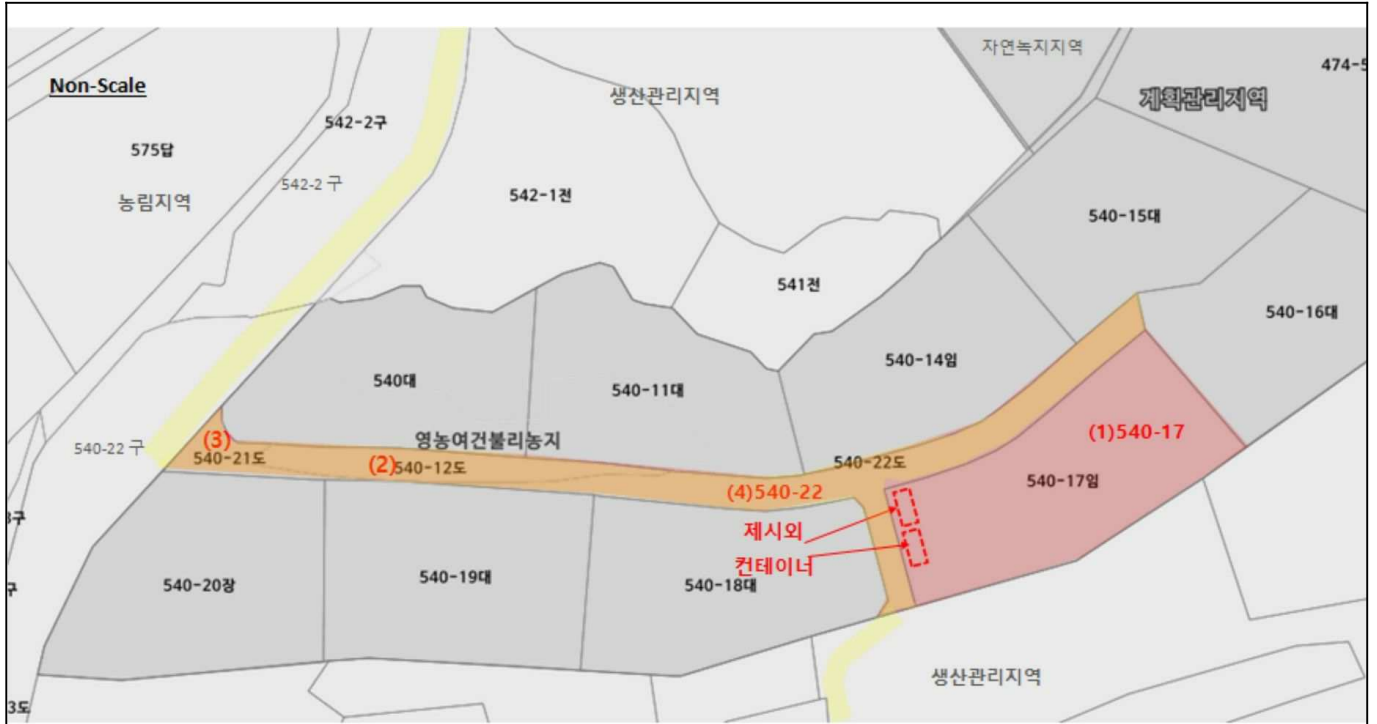
#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540-17외



# 지 적 도



## <참 고 도 >



(기준시점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표시 및 경계선은 개략적인 표시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1)



(1, 4)



(2)



(3)



(4)



(1) (4)



(1) 2